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김용연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5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김용연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상진, 김생환, 김수규,
문영민, 양민규, 이동현,
이석주, 이호대, 전병주,
최기찬, 황인구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역사교육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
- 역사교육은 국민의 정체성 함양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참된 역사교육이 필요함
-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에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 함양에 관한 내용을 담을 것을 규정함(안 제5조제7호)
- 나.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있어 역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할 것을 규정함(안 제6조제2항제5호)

다.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의 기능에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(안 제9조제2항제5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육기본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 함양

제6조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역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

제9조 제2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)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5조(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.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 함양</u></p>
<p>제6조(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②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6조(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역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</u></p> <p>6.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
<p>제9조(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) ②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	<p>제9조(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</u></p>

6. 그 밖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을
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사업